‘26. 10.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정 과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6-95

제출연월일 : 2026. 10. .
제 출 자 : 김 제 시 장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전자무인민원발급기 발급수수료를 면제하여 이용자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라 인용 법령명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안 제7조제3항 신설)

- 수수료 면제 대상 :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 45종
- 수수료 면제 제외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법원 소관 수수료)

○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 법령명 정비(안 제7조제1항제8호)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참고사항

가. 방침 결재 여부 : 여

나. 규제심사 대상 여부 : 여

다. 예산수반 여부 : 여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여

마. 성별영향평가 대상 여부 : 여

바. 자치법규 검토(부서의견조회) 대상 여부 : 여

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대상 여부 : 여

아.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자. 입법예고기간 : 2026. 8. 21. ~ 9. 10.(20일간)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규제심사 결과 :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 **해당없음**

바. 자치법규 검토결과 : **이견 없음**

사. 입법예고 결과 : **이견 없음**

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 **원안가결**

자. 관련 법령 발췌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차. 참고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발췌
- 무인민원발급창구 민원 종류 및 수수료 현황
- 관내 무인민원발급창구 현황
- 전북자치도 내 타 시·군 조례 발췌서(남원시)

카. 현행 조례

타. 방침결정문

김제시 조례 제 호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수수료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에 관한 증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제7조(수수료 감면 등) ①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해 발급하는 민원문서의 수수료 면제에 따라 연평균 4,105천원의 세입 감소

<2023년~2025년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수납액>

(단위 : 천원)

구 분	세 목	수납액	비 고
총 계		12,314	
2023년	무인민원발급기수입	3,580	
2024년	무인민원발급기수입	4,188	
2025년	무인민원발급기수입	4,546	

2. 미첨부 근거 규정

○「김제시 조례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로 세외수입 감소가 예상되나, 그 소요액(세입 감소액)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므로「김제시 조례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함

4. 작성자 : 세외수입팀장 이용기

세정과장 최 근 열

□ 규제심사 결과 : 해당없음

제28회 김제지평선축제 10. 1.(목) - 10. 5.(월)

김 제 시

수신 세정과장
(경유)
제목 규제심사 회신(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세정과-14188(2026. 9. 10.)호와 관련하여 규제심사 결과,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규제에 해당하지 않아**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회신 1부. 끝.

기 획 감 사 실 장

주무관 최보훈 의회법무팀장 이혜라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2026. 9. 11.
협조자
시행 기획감사실-12640 (2026. 9. 11.) 접수 세정과-14350 (2026. 9. 11.)
우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김제시청 기획감사실 (서암동)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3723 팩스번호 063-540-3576 / qhgns0824@korea.kr / 비공개(5)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회신일	2026. 9. 11.

자치법규명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구분	제정( ) 개정안(○)
소관부서	세정과	담당자 (행정전화)	최보랑 3284	기타	세정과-14188 (2026. 9. 10.)
제·개정 및 폐지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전자무인민원발급기 발급수수료를 면제하여 이용자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라 인용 법령명을 현행화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안 제7조제3항 신설) - 수수료 면제 대상 :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 45종 - 수수료 면제 제외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법원 소관 수수료) ○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 법령명 정비(안 제7조제1항제8호)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검 토 의 견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위 개정안은 기존 제증명 수수료 면제에 관한 사항으로,「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u>규제에 해당하지 않음</u>**				

규제심사 결 과	신설( )	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 : 서해영(3206) / 의회법무팀장: 이혜라(3213) / 담당자: 최보훈(3723)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 해당없음

제28회 김제지평선축제 10. 1.(목) - 10. 5.(월)

김 제 시

수신 세정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2026A전북김제032)-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1. 세정과-13603(2026.9.1.)호와 관련됩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은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 및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 단순 변경에 해당하므로, 제출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교 육 가 족 과 장 영

주무관 김지은 여성가족팀장 최남 교육가족과장 전결 2026. 9. 2. 김숙영
협조자
시행 교육가족과-29616 (2026. 9. 2.) 접수 세정과-13715 (2026. 9. 2.)
우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서암동)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6905 팩스번호 063-540-6929 / kjekje44@korea.kr / 대국민 공개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

□ 자치법규 검토결과 : 이견 없음

결 과 보 고 서

김 제 시

문서번호 세정과-14264

제 목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서 의견조회 결과보고

세정과-13604(2026. 9. 1.)호와 관련하여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서 의견조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조 례 명 :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2. 의견조회기간 : 2026. 9. 1. ~ 9. 10.(10일간)
3. 의견조회결과 : 의견없음
4. 보고자 의견 : 부서 의견제출이 없으므로 이후 행정절차를 진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끝.

2026. 9. 11.

김 제 시 장 귀하

주무관	최보랑	세외수입팀장	이용기	세정과장	최근열

협조자

□ 입법예고 결과 : 이견 없음

결 과 보 고 서

김제시

문서번호 세정과-14266

제 목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결과보고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조 례 명 :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2. 공고기간 : 2026. 8. 21. ~ 9. 10.(20일간)
3. 공고방법 : 김제시보(공고 제2026-961호), 김제시 홈페이지
4. 의견수렴 : 의견없음
5. 보고자의견 :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없으므로 이후 행정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끝.

2026. 9. 11.

주무관	최보랑	세외수입팀장	이용기	세정과장	최근열

협조자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 원안가결

제28회 김제지평선축제 10. 1.(목) ~ 10. 5.(월)

김 제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6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알림

기획감사실-12714(2026. 9. 14.)호와 관련하여 2026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 자 : 2026. 9. 16.(수)
2. 심의방법 : 서면심의
3. 참석위원 : 8명
4. 심의안건 : 9건(조례 6, 규칙3)
5. 의결결과 : **원안가결 9건**

연번	심의번호	소관부서	안건명	의결결과
계			총 9건 (조례 6, 규칙3)	
1	2026-43	김진수 의원(의회사무국)	김제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2026-44	김영자 의원(의회사무국)	김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2026-45	행정지원과	김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4	2026-46	행정지원과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5	2026-47	행정지원과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6	2026-48	세정과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2026-49	회계과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8	2026-50	경제진흥과	김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9	2026-51	건설과	김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붙임 2026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자료 각 1부. 끝.

김 제 시 장

수신자 김제시의회의장, 행정지원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경제진흥과장, 건설과장

주무관 [redacted] 의회법무팀장 [redacted] 기획감사실장 [redacted] 2026. 9. 18.
협조자
시행 기획감사실-13105 접수
우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김제시청 기획감사실 (서암동)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3723 팩스번호 063-540-3576 / qhgns0824@korea.kr / 비공개(5)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

□ 관련 법령 발췌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민원문서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한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6호, 2026. 3. 5., 타법개정]

제7조(등록 및 결정) ①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순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참고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발췌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

김 제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현황 알림 및 이행결과 제출요청**

1.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885(2026. 4. 9.)호와 관련 입니다.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7조 등에 따라 제도개선 권고과제 및 이행현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3. 해당부서에서는 '26.3월말 기준 이행현황을 점검하여(이행 컨설팅 · 전략회의 신청여부 포함) 그 결과를 **서식 관리대장(붙임1) 및 이행현황통보서(붙임2)에 따라** '26 .4. 1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자료는 '2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반영되며, 언론공표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기 완료된 과제가 **청렴노력도 평가 재점검과제에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이행관리 바랍니다.**

[문의] 이행결과 제출 관련 : (권익위)진정인조사관(☎ 044-200-7219)
권고내용 관련 : 과제별 이행관리담당자(붙임1. 엑셀파일 참고)

붙임 1.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현황 관리대장 1부.
2.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현황통보서 서식 및 작성요령 1부.
3. 이행현황 관리대장 작성요령 1부.
4.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현황 통보서(2025년) (작성시 참고자료) 1부. 끝.

김 제 시 장

수신자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장, 문화관광과장, 민원지적과장, 회계과장, 경제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교육가족과장, 환경과장, 자원순환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교통행정과장, 산림녹지과장,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농업정책과장), 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송이	감사팀장	강복이	기획감사실장	전결 2026. 4. 10. 이명호

협조자

시행 기획감사실-5015 (2026. 4. 10.) 접수 민원지적과-8608 (2026. 4. 11.)

우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서암동)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2971 팩스번호 063-540-3576 / 2gnos@korea.kr / 비공개(5,6)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

❍ 무인발급기 수수료 상이

○ 국가유공자는 민원처리법상 수수료 면제대상자에 해당되나, **무인민원발급기로는** 유공자 신분확인이나 증명서 발급이 불가하여 **수수료를 면제받지 못하는 실정***

> ▲ **(민원질의)** 수급권자는 무인발급기에서 지문인식하면 무료 발급되는데, 국가유공자는 주민센터에서 대면 발급해야 함. **유공자도 무인발급 이용하여 무료 발급 해주었으면 함**
>
> ▲ **(답변)** 지자체의 무인증명발급기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제한된 정보만 활용되어 **국가유공자가 무인증명발급기를 통해 증명 발급 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못받고 있음**. 가까운 시일 내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한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림
>
> (2013. 3월, 국민신문고)

○ 한편, 전자문서로는 무료 발급이 가능하고, 국민 모두에게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는 문서인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가족관계 증명* 등의 **수수료(발급 비용)가 지자체마다 차이** 발생

※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해당 문서 수수료는「주민등록규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나, 수수료 감면 지자체도 상당함

【수수료 관련 규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주민등록표의 열람(전입세대 열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1건 1회에 300원
2.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는 1통에 400원(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초본교부는 500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증명서등의 수수료) ②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1,000원으로 하고,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으로 한다**. 다만,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300원**으로 하고,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제적부의 열람 및 제적 등·초본 발급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 지자체별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현황 >

구분	무료	200원 이하	400원 이하	600원 이하	800원 이하	1,000원 이하	발급 불가	계
주민등록등(초)본	34	195						229*
토지(임야)대장등본	3	3	40	183				229
건축물대장	3	3	41	182				229
농지원부(농지대장)	4		1	224				229
등기부등본						**229**		229
국세 납세증명서	**229**							229
지방세 납세증명서	**229**							229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4		25	68	132			229
졸업증명서-국립대학교							**229**	229
졸업증명서-사립대학교							**229**	229
가족관계증명서	20		1	208				229

* 국·사립대학교 졸업증명서 등은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불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는 국세징수법 제108조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에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규정(민원발급기 수수료도 무료)

< 3개 기초지자체 비교(예시) >

구분		종로구 사직동주민센터		서초구 서초1동주민센터		수영구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	발급기	민원창구	발급기	민원창구	발급기
민원문서 종류			82종		83종		83종
운영시간		09~18 (평일)	**09~18 (평일)**	09~18 (평일)	**24시간 (연중무휴)**	09~18 (평일)	**24시간 (연중무휴)**
수수료	주민등록 등·초본	400원	**200원**	400원	**200원**	400원	**무료**
	가족관계 증명서	1,000원	**500원**	1,000원	**500원**	1,000원	"
	건축물대장	500원	500원	500원	**300원**	500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800원	800원	800원	**400원**	800원	"

❍ 수수료 인하·감면

○ 주민 부담 완화를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수수료를 인하·감면**하고, **수수료 인하내용과 사용방법을 고지·홍보**

□ 참고자료 : 무인민원발급창구 민원 종류 및 수수료 현황

업 무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	종수	수수료(원)		본인확인
			관내	관외	
주민등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2	200		필요
토지 지적 건축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	800		불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1,000	2,000	불필요
	토지(임야)대장등본 대지권등록부	2	500 (20장 추가 장당 100)		불필요
			500 (1장 추가 장당 100)		
	건축물대장 ※일반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	5	500		불필요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2	300		필요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갑, 을)	2	500		필요
보건 복지	수급자증명서	1	무료		필요
	장애인증명서	1	무료		필요
	한부모가족증명서	1	무료		필요
농촌	농지대장	1	500	불가	필요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2	무료		필요
병적	병적증명서 ※군복무필자, 면제자, 제1국민역	3	무료		필요
지방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취득세,등록세,면허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농업소득세,도축세,레저세,담배소비세,종합토지세,주행세,지방소비세,등록면허세,사업소세,지역개발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소득세	18	500	불가	필요
	지방세납세증명	1	무료		필요
부동산 (법원)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토지, 집합건물	1	1,000		불필요
가족관계 (법원)	제적부 ※제적등본, 제적초본	2	등본 : 500, 초본 : 300		필요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폐쇄) 기본증명서(폐쇄), 혼인관계증명서(폐쇄), 입양관계증명서(폐쇄)	8	500		
수산	어선원부	1	800		불필요

업 무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	종수	수수료(원)		본인확인
			관내	관외	
교육	검정고시 성적증명서(국문,영문)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국문,영문) 제적(정원외관리)증명서 성적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졸업증명서(국문,영문), 졸업예정증명서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16	무료		필요
국세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근로(자녀)장려금수급사실증명	13	무료		필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연말정산용)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7	무료		필요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근로자용)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보험급여지급확인원(근로자용)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법인/개인) 고용·산재보험 신고여부 및 완납증명원(법인/개인)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법인/개인)	16	무료		필요
여권	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영)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 여권실효확인서(국/영) 여권정보증명서(국/영)	7	무료		필요
국민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국민연금 수급증명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개인)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6	무료		필요
경찰청	운전경력증명서(국문) 운전경력증명서(영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3	무료		필요

□ 참고자료 : 관내 무인민원발급창구 현황(2026년)

순번	발급기명		발급(건)	수수료(원)
합 계		등기부 포함	27,013	7,100,100
		등기부 제외	24,400	4,487,100
1	용지면 행정복지센터		1,503	222,800
2	백구면 행정복지센터		1,156	147,100
3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2,339	652,600
4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1,741	423,700
5	요촌동 행정복지센터		3,148	766,300
6	신풍동 행정복지센터		3,889	922,900
7	검산동 행정복지센터		4,526	884,200
8	교월동 행정복지센터		1,750	251,000
9	시청민원실(옥외)		2,829	658,200
10	시청민원실(등기부)		1,700	1,700,000
11	김제시보건소		1,169	250,500
12	농업기술센터 상록관		284	50,300
13	지평선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841	165,700
14	검산주공1차아파트		138	4,800

※ 미설치 읍면동(11개) : 만경읍, 죽산면, 백산면, 부량면, 공덕면, 청하면, 성덕면, 진봉면, 봉남면, 황산면, 광활면

※ 추가 설치 계획(2027) : 농어촌공사 동진지사, 백산면 행정복지센터(시비 60,000천원)

□ 참고자료 : 전북자치도 내 타 시·군 조례 발췌서(남원시)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6.07.09]

(일부개정) 2026.07.09 조례 제2295호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단,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 현행 조례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1.12.15]

(일부개정) 2021.12.15 조례 제147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4.17 조례836>

제2조(적용) 김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04.17 조례836>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1.8>

제3조의2삭제 <2002.12.18>

제3조의3(정보공개수수료)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기준) ①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1.8.>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사람이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김제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삭제 <2002.12.18>

③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라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개정 2013.04.17 조례836>

④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3.04.17 조례836>

제6조(기 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사항이 발급·처리되기 전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와 시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처리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단서신설2010.11.22조례700>

제7조(수수료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에 관한 증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2.2.25> <개정 2013.04.17 조례836>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3.04.17 조례836>
3. 「장애인복지법」제30조에 따라 김제시 등록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9.4.15> <개정 2013.04.17 조례836>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의한 김제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11.22>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의한 김제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0.11.22> <개정 2013.04.17 조례836>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3.04.17 조례836>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3.04.17 조례836>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3.04.17 조례836>

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3.04.17 조례83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 등에 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해당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신설2009.4.15>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신설 2009.4.15> <개정 2013.04.17 조례836>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신설 2009.4.15.> <개정 2013.04.17 조례836>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신설 2009.4.15> <개정 2013.04.17 조례836>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 방침결정문

지평선 너머 새만금까지 비상하는 김제

문서번호	세정과-12178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26. 8. 5.
공개여부	비공개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정과장	자치행정국장	부시장	시장
최보랑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이해서	정성주

협조		
	의회법무팀장 이해서	안원소통팀장 이 길순
	기획감사실장 [illegible]	안원지적과장 최미화

예산팀장 최시아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계획(안)

김제시 세정과